

의안번호

제125호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안) 보고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2. 9. 14.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안) 보고

의 안 번호 제125호

제출연월일: 2022. 9. 14. 제 출 자: 논 산 시 장

1. 보고근거

○ 「지방자치법」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에 따라 참여민주 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함.

2.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현황

가. 일반현황

구성일자	구성목적	가입 단체 (15개 지방정부)	
 협의회 창립총회: 2019.8.23. 의회의결: 2019.9.23. 협의회 규약 고시: 2019.10.1. 	다양한 참여정책을 추진 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공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연대를 위함	서울 성동구, 부산 금정 구, 인천 동구, 광주 남구, 경기 화성시, 안산시, 남 양주시, 안양시, 이천시, 오산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u>충남 논산시</u> , 경남 거제시	

나. 논산시 활동현황

일 자	내 용	비고
2019. 8. 23.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창립총회) 참석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부담금, 회장 선출 등 확정	
2019. 10. 23.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세칙 확정, 2020년 사업계획 공유	

일 자	내용	비고
2020. 1. 17.	부담금 납부(금 오백만원)	
2020. 6. 23.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국제 직접민주주의 아시아 의장국 설립, 임원진 선출, 2021년 사업계획 공유	
2020. 11. 5.~11. 6.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워크숍 참석	
2021. 1. 08.	부담금 납부(금 오백만원)	
2021. 7. 15.	참여민주주의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지방정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임원진 선출, 2022년 사업계획 공유	
2022. 2. 10.	부담금 납부(금 오백만원)	

3. 협의회 폐지 이유

민선8기 출범에 따라 협의회 회원도시 활동 지속여부 파악 결과(참여2, 불참12, 미정1)에 따라 협의회 지속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협의회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 이후 추진상황

○ 부담금 잔액 회수를 위한 납입고지서 발송

※ 부담금 총액 대비 각 회원도시 납부 비중으로 잔액 분배

연번	구분	부담금 납부 현황				비중	분배금	
		2020	2021	2022	계	10	판매금	
1	서울 성동구		규익	· 미동의		0%	-	
2	부산 금정구	5,000,000	5,000,000	5,000,000	15,000,000	6%	9,873,623	
3	인천 동구	5,000,000	5,000,000	5,000,000	15,000,000	6%	9,873,623	
4	광주 남구	5,000,000	5,000,000	-	10,000,000	4%	6,582,415	
5	경기 화성시	10,000,000	10,000,000	10,000,000	30,000,000	12%	19,747,246	
6	안산시	10,000,000	10,000,000	10,000,000	30,000,000	12%	19,747,246	
7	남양주시	10,000,000	10,000,000	10,000,000	30,000,000	12%	19,747,246	
8	안양시	10,000,000	10,000,000	10,000,000	30,000,000	12%	19,747,246	
9	이천시	5,000,000	5,000,000	5,000,000	15,000,000	6%	9,873,623	
10	오산시	5,000,000	5,000,000	5,000,000	15,000,000	6%	9,873,623	
11	여주시	규약 미동의				0%	-	
12	양평군	5,000,000	5,000,000	5,000,000	15,000,000	6%	9,873,623	
13	과천시	5,000,000	5,000,000	5,000,000	15,000,000	6%	9,873,623	
14	충남 논산시	5,000,000	5,000,000	5,000,000	15,000,000	6%	9,873,623	
15	경남 거제시	5,000,000	5,000,000	5,000,000	15,000,000	6%	9,873,623	
	계	85,000,000	85,000,000	80,000,000	250,000,000	100%	164,560,382	

붙임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 가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소	관	부	서	성		码
입	마을지	·치분권	원과장		이 영 택	
^ㅂ 안 자	마 을	자 치	팀 장		정 은 숙	
	담	당	자		김 현 정 (746-5243)	